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국산 플로트관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690호, 2018. 8. 31.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21년 8월 30일에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2. 3. 4. ~ 3.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플로트(float) 공법으로 생산된 중국산 플로트판유리(「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005.21.4000호, 제7005.21.5000호, 제7005.21.6000호, 제7005.21.7010호, 제7005.21.7020호, 제7005.21.7030호, 제7005.29.4010호, 제7005.29.4090호, 제7005.29.5010호, 제7005.29.5090호, 제7005.29.6010호, 제7005.29.6090호, 제7005.29.7010호, 제7005.29.7090호, 제7005.29.8010호, 제7005.29.8090호, 제7005.29.9010호, 제7005.29.909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코팅유리(Coated Glass), 무늬유리(Patterned Glass), 망입(網入)유리(Wired Glass), 복층유리(Insulating Glass), 강화유리(Tempered Glass), 접합유리(Laminated Glass), 에칭유리(Etched Glass), 저철분유리(Low Iron Glass) 등 판유리의 효용을 개선하기 위해 가공한 유리는 제외한다.

1. 맑은 유리(Clear Float Glass): 두께가 4밀리미터(mm)를 초과하고 13
밀리미터(mm) 미만인 것

2. 색유리 중 그린유리(Green Glass): 두께가 4밀리미터(mm)를 초과하
고 13밀리미터(mm) 미만인 것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
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2021년 8월 31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p>1. 차이나글라스그룹(China Glass Holdings Ltd.)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p> <p>가. 종보테크(Zhongbo Technology Co., Ltd.)</p> <p>나. 북경 친창(Beijing Qinchang Glass Co., Ltd)</p> <p>다. 장쑤 수후아다(Jiangsu SHD New Materials Co., Ltd.)</p> <p>라. 항저우 신재료테크(CNG(Hangzhou) New Materials Technology Co., Ltd.)</p> <p>마. 난징 유안홍(Nanjing Yuanhong Special Glass Co., Ltd.)</p> <p>바. 셴양 코팅유리(Xianyang CNG Coated Glass Limited)</p> <p>사. 웨이하이 코팅글라스(Weihai CNG Coated Glass Co., Ltd.)</p> <p>아. 웨이하이 블루스타(Weihai Blue Star Technology and Industrial Park Company Limited)</p> <p>자. 웨이하이 태양광(Weihai China Glass Solar Co., Ltd)</p> <p>차. 웨이하이 뉴테크 글라스(Weihai CNG New Technology Glass Ltd.)</p> <p>카. 웨이하이 CNG 수출입(Weihai CNG Import and Export Co., Ltd.)</p> <p>타. 스촨신재료(Suqian CNG New Materials Co., Ltd.)</p> <p>파. 우하이 하이보 상사(Wuhai Haibo Trading Co., Ltd)</p> <p>하. 우하이 스페셜글라스(Wuhai CNG Special Glass Co., Ltd.)</p> <p>거. 우하이 블루스타 운송(Wuhai Blue Star Transportation Co., Ltd)</p> <p>너. 한중 블루스타(Hanzhong Blue Star Silicon Sand Co., Ltd.)</p>	36.01

<p>더. 산시 CNC뉴테크(Shaanxi CNG New Technology Limited)</p> <p>러. 동타이 글라스(Dongtai China Glass Special Glass Co., Ltd.)</p> <p>머. 홍콩 국제차이나글라스(China Glass(CNG) International Co. Limited)</p> <p>버. 린이 CNC글라스(Linyi CNG Glass Co., Ltd.)</p>	
<p>2. 진징그룹(Jinjing Group Co., Ltd.)과 그 관계사인 각 목의 기업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p> <p>가. 산둥 진징(Shandong Jinjing Science & Technology Stock Co., Ltd.)</p> <p>나. 쯔보 중기(Zibo Zhongqi Building Materials Co., Ltd.)</p> <p>다. 쯔보 진칭(Zibo Jinxing Glass Co., Ltd.)</p> <p>라. 텅저우 진징(Tengzhou Jinjing Glass Co., Ltd.)</p> <p>마. 텅저우 푸민(Tengzhou Fumin Glass Co., Ltd.)</p> <p>바. 랑팡 진비아오(Langfang Jinbiao Glass Co., Ltd.)</p> <p>사. 산둥 진징상사(Shandong Jinjing Trade Co., Ltd.)</p> <p>아. 칭다오진징(Qingdao Jinjing Co., Ltd.)</p> <p>자. 닝샤 진징(Ningxia Jinjing Science and Technology Co., Ltd.)</p> <p>차. 북경 진징(Beijing Jinjing Wisdom Co., Ltd.)</p> <p>카. 린이 야홍(Linyi Yahong Economic And Trade Co., Ltd.)</p> <p>타. 산둥 하이티엔(Shandong Haitian Biochemical Co., Ltd.)</p> <p>파. 북경 진징 그린빌딩(Beijing Jinjing Green Building Technology Co., Ltd.)</p> <p>하. 북경 킹테크(Kingtech Cloud Computing (Beijing) Software CO., Ltd.)</p>	
<p>3. 칭다오판유리(Qingdao Float Glass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p>	
<p>4. 칭다오진징(Qingdao Jinjing Stock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p>	
<p>5. 야오후아(Qinhuangdao Yaohua Glass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p>	

	6. 티지창지양(TG Changjiang Glass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7. 지양수과룬(Jiangsu Farun Goup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8. 그 밖의 공급자	

비고: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 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제8호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1호에서 제7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